

『무역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8.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 례〉

I . 통계개요	1
II .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5
III . 통계설계	9
IV . 자료수집	23
V . 자료처리	29
VI .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34
VII . 통계기반 및 개선	52
VIII . 참고문헌	56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무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개요

1. 통 계 명

무역통계

2. 법적근거

- 관세법 제322조
 - 관세청장은 수출입 화물, 그 밖의 외국 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및 열람 교부

3. 작성방법

- UN의 국제상품무역통계(IMTS,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개념과 원칙 적용
 - 국가 간 자원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제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을 모두 포함
 - (금액기준) 수입은 CIF, 수출은 FOB, 금액의 평가는 WTO 협정을 따름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관세법 제322조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대행기관(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지정·운영하여 정부기관은 관세청, 공공기관, 협회, 개인 등의 요청통계는 통계교부대행기관에서 교부

5. 작성 및 공표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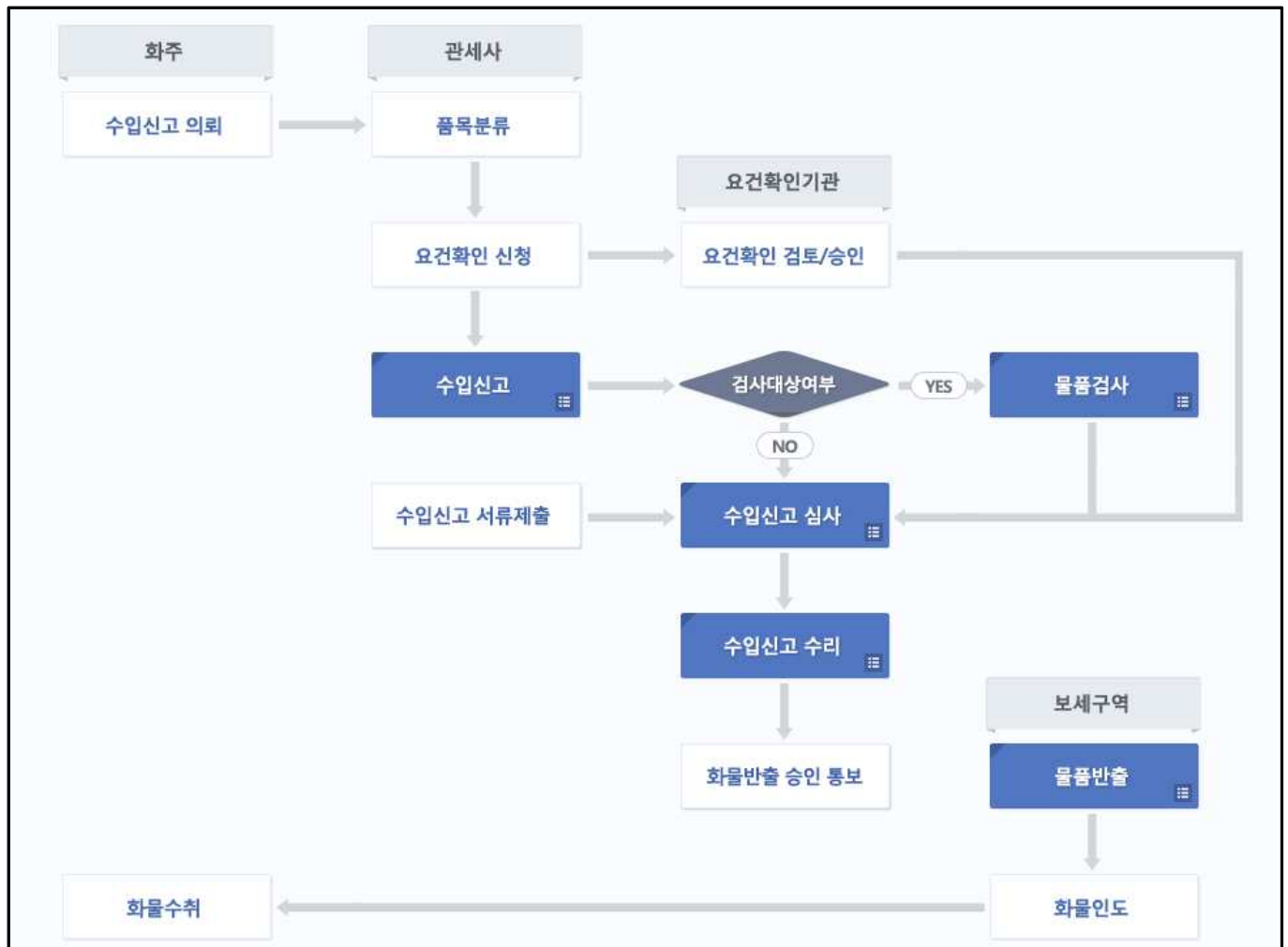
- 매월1일(잠정), 11일, 21일(속보), 15일(마감), 월별 간행물(수출입동향), 무역통계 연보(연1회)

6. 통계작성과정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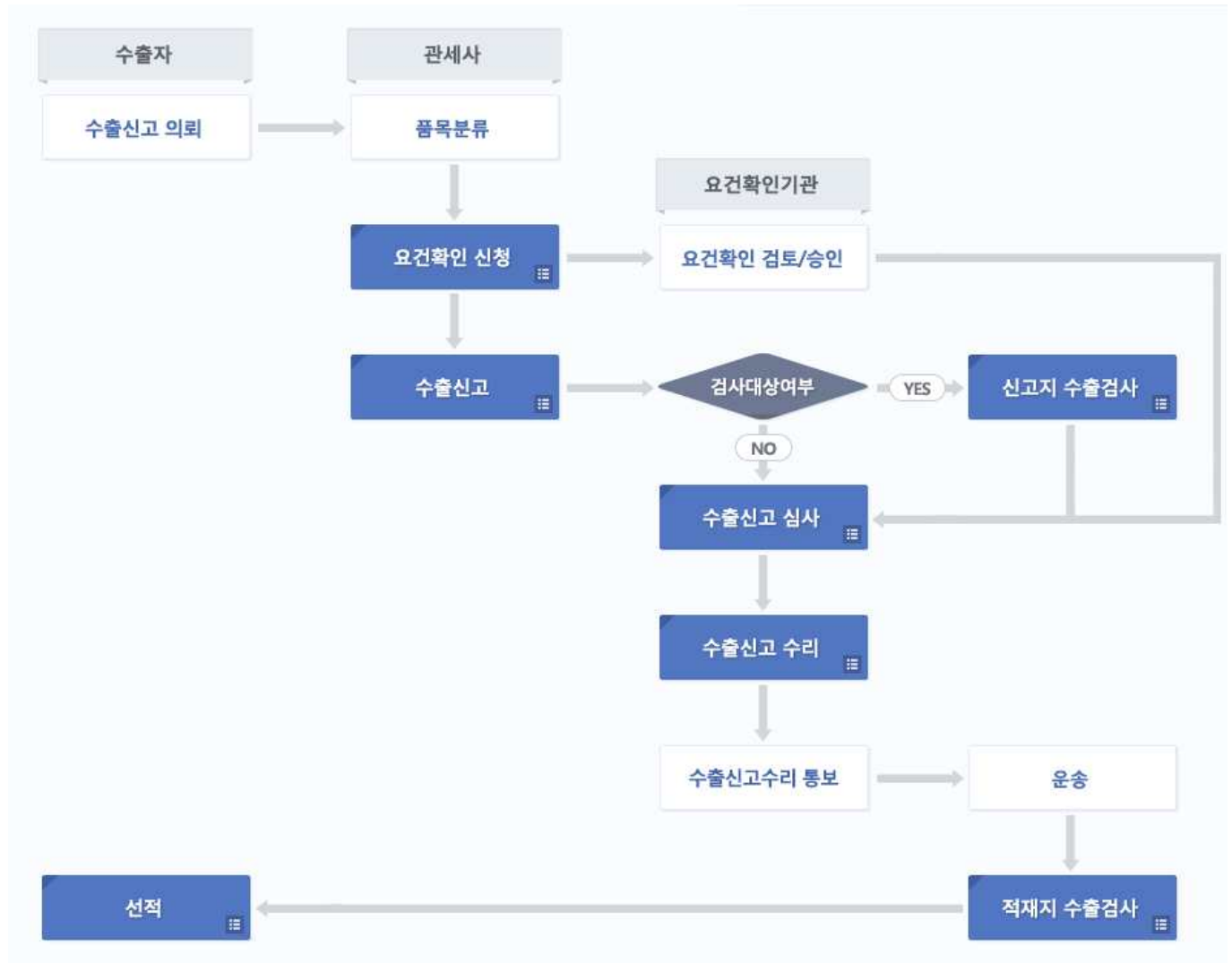
☐ 통계작성 및 공표 관리

- 무역통계는 수출입 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기초로 수집한 자료를 품목분류번호(HS Code), 관세청분류체계(성질별·신성질별), 국가별, 세관별 등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국민, 기업, 정부부처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표

<수입신고프로세스>



<수출신고프로세스>



<일정별 수행업무>

월 무역통계 마감 및 년 확정 일정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① 월마감	통계마감준비(통계오류 점검)														
	당월지달표				통계전산마감(성질별, 국가별, 지역별 등 집계 DB 생성)						속보지달표				
										세관보도자료, 기관별 교부통계 추출 (업무수첩, 수출입동향발간 통계 등)					
															기관 통계교부 무역통계 공표
② 연확정	1월				2월										
	1월~15일				1월~10일			11월~14일		15일		15일 이후			
	전년도 잠정치 통계 마감 발표				전년도 통계확정준비			전년도 통계확정		전년도 확정통계 발표		확정치 통계 교부 등			

※ 공휴일 고려 시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7. 통계연혁

□ 개발배경

- 국제적인 인적, 물적교류의 증가와 함께 국가간 상호의존성 증대는 각종 통계의 중요성을 증가시켰고 특히, 서로 다른 경제주체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무역 통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무역통계 작성 필요

□ 통계의 개념

- 일국의 경제영역으로 반입(수입)되거나 반출(수출)됨으로써 그 나라의 물적자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상품의 기록, 단순히 한 나라를 통과하는 물품이나 일시적으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은 그나라의 물적자원량을 증가,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 통계발표 연혁

- '71. 1 수출통계 집계 개시(상공부)
- '73. 7 무역통계 작성기관 지정(상공부 ⇒ 무역협회)
- '74. 무역통계 작성을 위한 부호 책자 발간 시작
- '75. 5 무역통계 작성기관 관세청으로 일원화(경제장관회의)
- '76. 7 무역통계 국가승인통계
- '77. 무역통계연보 및 월별 수출입 동향 발간 시작
- '92. 통계표 교부 개시
- '94. 1 그림으로 보는 무역통계 발간 시작
- '03. 5 통계교부대행 기관 지정(한국관세무역개발원)
- '08. 통계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고시 개정
- '12.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른 통계 공표
- '14.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른 통계 공표
- '16. 6 잠정치(매월1일), 속보치 무역통계 발표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작성 목적

- 국가별, 상품별 수출입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무역정책 및 관세정책 수립에 활용

☐ 활용분야

- 무역통계 작성 초기에는 각국의 물적 자원 총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상품을 기록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초로 산업분류체계(성질별·신성질별)에 따라 작성한 통계를 대국민 공표 중이며 지속 보완 예정
- 국내 신성장산업 등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무역통계 활용 확대
 - 관세정책수립 지원 및 대국민 무역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무역통계부문만의 특화된 연구·분석
 - 주요 농수축산물의 국내가격 안정과 국제수급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경제이론을 적용, 수입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 등 사회·경제적으로 시의성과 시사성을 갖춘 수출입 동향분석 지원
-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투자공사)과 협의하여 수출입기업의 수출 장려·지원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성을 점차 높여 나가는 방안 마련·추진 중
- 서민물가 민감 품목위주로 100여개 수입물품*의 평균가격 공개로 물가안정에 기여

[활용 예시 : 메르스, 브렉시트 관련 동향분석, 한진해운 사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지원]

제공내역	제공기관	대응방안 마련 등 성과
메르스이후 수출입·경제동향보고('15.6월)	기재부 /BH	■ 국외여행자, 면세점매출, 수출입통관 분석 등 대응방안 마련('15.7월)
브렉시트이후 동향분석('16.6월)	기재부	■ 브렉시트관련 수출입 대응방안 마련('16.6월)
한진해운 사태 관련 금액·물량자료 제공('16.9월)	기재부	■ 한진해운관련 대응방안 기초자료 제공('16.9월)
퀄런형 전자담배 통계 제공('17.10월)	국회·기재부	■ 새로운 상품의 품목분류의 모호하여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 마련·시행('17.2월)

☐ 국가간 무역통계회의 통계작성 방법 비교(예시)

<한국>

- 기본원칙
 - 한국은 국제적인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UN의 국제 무역통계 개념과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무역통계에는 한국자원량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경제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자료의 범위

- 계상범위 : 다음거래는 무역통계에서 제외한다
-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 중계무역되는 물품
- 1년 미만의 리스물품
- 업용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 지역범위 : 대북 반출·입물품은 무역통계에서 제외한다

○ 집계기준 및 발표 시기

- 수입은 CIF, 수출은 FOB가 수출입 금액기준이 된다
- 수출은 목적국, 수입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 수출입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된 때에 수출입물품이 무역통계에 계상된다
- 월간자료는 익월 중순 이후에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연간자료는 익년 50일 이후에 발표

○ 통계의 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

-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리 도모 및 다양한 통계자료 신속 제공
- 관세와 무역통계에 관한 전문 연구 기관 육성
- 대행기관 자격 및 시설요건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 기초 통계 자료의 오류를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통계자료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의 전산시스템 구비

○ 신고수리일 기준 및 출항일 기준 수출통계 병행 집계

- UN 무역통계 작성지침에 의하면 무역통계는 수출입되는 물품이 그 나라의 경제영역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계상되도록(Goods are to be included at the time when they enter or leave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권고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통계는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계상 되고 있으나, '97년 7월 수출화물 EDI 시스템이 개통됨으로써 출항일 기준 통계 집계가 가능하며 '03년에 출항일 기준 통계 DB가 구축됨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시점 통계와 병행하여 출항일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중국>

○ 통계 작성방법

- '95년 이후 무역시스템(General Trade System)을 개발·활용
- '92년 이후 HS 8단위 수준까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집계 및 공표
 - 수출신고 수리후 30일내에 물품을 선적하여 출항하도록 하는 적재 의무기한 규정이 있음
- 우리와 달리 보세판매장의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하여 집계함

○ 자료의 생산 및 발표

- 자료는 각 해관에서 1차로 검토한 후 지역본부해관(Customs District)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1개월 단위로 해관총서로 전송됨
- 익월 8일에 잠정치를 공표하며, 13일에 확정치를 공표(화폐단위: 유로)
 - '99. 6월부터 인터넷(<http://www.customs.gov.cn>)을 통해 자료 제공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 활용

- 기획재정부의 관세율 정책수립,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통계 작성, 국세청의 국세부과징수,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의 임산물, 수산물 수입현황 관리, 검역기관 등의 국민안전 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수입규제 관리 정책 수립 등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등에 활용
- 무역통계는 누구나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수립 및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에 활용

□ 통계 이용자 유형

- 무역업체 또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출입 품목 현황조사, 연구단체의 국가 간 교역현황 조사,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올해부터 이용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추진 예정

- (대민) 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tat/>)를 통해 만족도 조사 진행
- (전문가) 무역통계 교부대행기관, 협회, 공공기관 담당자와 무역통계 수요조사 등 진행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고객 만족도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UNI-PASS)의 외부위탁운영에 대한 현재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서비스 품질향상 및 시스템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 조사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관세청장

※ 이 설문에 관련된 문외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06048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3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6층 관세무역연구실
전화번호 : 02-3416-5187, 02-3416-5114 / FAX: 02-3416-5180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소개

UNI-PASS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으로 세계최초 100% 전자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UNI)하여 원스톱처리(Pass)가 가능한 전자통관포탈 시스템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는 전 세계 11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입니다.

설문평가 항목

1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운영

2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운영

3 관세청 무역통계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stat/>) 운영

A. 다음은 다양한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 A1. 관할 세관명? () 세관
- A2. 수행업무분류수입? () ①수출통관 ②수입통관 ③환급심사 ④사후심사 ⑤조사 ⑥감시
⑦수출화물 ⑧수입화물 ⑨관세징수 ⑩요건확인
- A3. 귀하의 연령은?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 A4. 귀하의 직급은? () ①관세사무원/담당자 ②사무장/관리자 ③관세사/의사결정자
- A5. UNI-PASS 사용경험은? () ①1개월 미만 ②6개월 미만 ③1년 미만 ④2년 미만 ⑤3년 미만 ⑥5년 이상
- A6. 귀사 업종업무영역은? () ①공공기관 ②수출입업체 ③통관업(관세사무소)
④물류업체(선사·항공사, 포워더, 운송, 창고, 선용품공급) ⑤기타()

B. 귀하께서는 UNI-PASS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작성(응답) 경험이 있습니까? (동 설문에 대한 응답경험)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없다	잘 모름
⑤	④	③	②	①

C. 귀하의 UNI-PASS의 각 분야별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 안함 (0회)	조금 이용함 (1~5회)	1년에 몇 차례 (6~11회)	1달에 몇 차례 (12~50회)	1주에 몇 차례 (51~100회)	거의 매일 (101회 이상)
UNI-PASS 이용횟수	①	②	③	④	⑤
UNI-PASS 기능개선 요구 횟수	①	②	③	④	⑤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①	②	③	④	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①	②	③	④	⑤

D1. UNI-PASS 전래운영에 대한 만족도 수준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품 질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자료 접근 및 원활한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친절응대 및 적극적인 고객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효과성	전자통관시스템 기능개선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애처리의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만족도는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2. UNI-PASS 전래운영 서비스에 대해 생각나는 중요도 수준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품 질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서비스	자료 접근 및 원활한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친절응대 및 적극적인 고객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효과성	전자통관시스템 기능개선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장애처리의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수출입신고서

-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의 수출입신고서 입력 항목을 토대로 집계
- 별도의 국제기준에 따른 보고양식은 아니지만 전자문서의 항목정의(예 : 국가부호)는 국제 기준(WCO DM3.0, WTO)에 따라 항목을 정의함

□ 항목정의서(수출)

항 목	TY PE	SIZ E	조 건	서 류/ EDI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자	A..	40	M	공 통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 관세사의 경우 : 신고자상호, 관세사성명 기재 - 자가통관업체의 경우 : 신고자상 호, 대표자성명 기재 - 기타 개인의 경우 : 성명 기재 ※ 다만, 화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 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 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주) 관세사○○ ○으로 기재	- 최신 관세법인 관세사 최고봉 - (주)최신상사 최고봉 - 최고봉 - 최신상사(주) 관세사 최고봉
②수출대행자	AN. .	28	M	공 통	○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 재. ※ 수출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 외 ○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대행자별로 분리하여 신고	- (주)다파라인터내셔널
- (통관고유 부호)	AN	15	C	공 통	○ 수출대행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관세청장(세관장)이 지정한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	- 초일류**1741204
- (일련번호)	AN. .	4	C	공 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 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 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 1~ (지사는 해당번호 기 입)
- 수출자 구 분	AN	1	M	공 통	○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 -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 우 : A -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 우 : B -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 A

항 목	TY PE	SIZ E	조 건	서 류/ EDI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수출화주	AN.	28	M	공 통	경우 : C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 인 경우 : D ○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	- (주)조일류상사
- (주소)	AN.	35	M	공 통	○ 수출화주의 주소를 기재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 로 123
- (대표자)	AN.	12	M	공 통	○ 수출화주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최일류
- (통관고유 부호)	AN	15	C	공 통	○ 수출화주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의 사업 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 생략	- 초일류**1741204
- (일련번호)	AN.	4	C	공 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 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 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 1 ~ (지사는 해당번호 기 입)
- (사업자등 록번호)	AN.	13	C	공 통	○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 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외국인의 여권번호 기재시 앞자리 에 “F”를 기재한 후,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 (13자 이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 는 경우 : 112-29-66062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 는 개인의 경우 : P811111234569 또는 701230-1645917 - 외국인으로 국적이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 345678901234인 경우 : FUS1234567890
- (소재지)	AN	3	M	공 통	○ 수출화주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 자리 번호를 기재.	- 134
③제조자	AN.	28	M	공 통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 를 기재	- (주)메이저상사

□ 항목정의서(수입)

항 목	TY PE	SIZ E	조건		서 류 /전 자 문 서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일 반	간 이			

항 목	TY PE	SIZ E	조건		서류 /전자 문서	작성요령	작성예
			일 반	간 이			
①신고번호 - 신고인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AN AN AN AN.	5 2 6 1	M M M C	M M M X	공 통	○ 신고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을 기재 - 수입신고인 부호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신고년도 기재 - 신고인이 관리하는 연도별 일련번호로서 중복될 수 없음(일련번호(6)+ 신고서식부호(1)) ·단, 통관포탈신고시는 인터넷신고와 중복방지를 위해 일련번호(5)+ 'P(포탈)'부여 ·신고서식부호 : 수입신고(M), 보세공장사용신고(B), 보세판매장반입검사신청(S), FTZ사용소비신청(F) - 일부 통관보류할 경우 통관보류된분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부여한 부호를 기재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	전자문서:43411 15101246M 서류:43411-15 -101246M
②신고일	AN	8	M	M	공 통	○ 신고일자룰 기재	전자문서:20010201 서류:2001/02/01
③세관-과 - 세관부호 - 과부호	AN AN	3 2	M M	M M	공 통	○ 통관지 세관 및 과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출신고세관의 세관 및 과부호를 기재	전자문서:13010 서류:130-10
④B/L(AWB)번호 - B/L(AWB)번호	AN. . AN.	20 5 4	C M C	C M C	공 통 전	○ House단위의 B/L(AWB)번호 및 분할수입신고 여부 - Master B/L(AWB)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L(AWB)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L (AWB)번호를 기재(적하목록상의 House단위 B/L(AWB)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L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함 -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true', B/L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false'을 기재 - B/L분할 수입신고인 경우 ()에 “분	DBSC96100123A B01 true

항 목	TY PE	SIZ E	조건		서류 /전자 문서	작성요령	작성예
			일반	간이			
- 분할수입신고 여부	. AN				자 서 류	할"출력	(분할)
⑤화물관리번호 - MRN - MSN - HSN	. AN. . AN. . AN. .	11 4 4	M C C	C C C	공 통	○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 - 적하목록 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o) - Master B/L(AWB) Sequence No. 4자리 기재 - House B/L(AWB) Sequence No. 4자리 기재 * 휴대품은 휴대품유치서상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NO"로 기재	전자문서:01KE 0766SS200100 003 서류:01KE0766 SS2-0010-000 3

1-2 적용 분류체계

□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 품목번호(HS Code) 분류체계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으며, 성질별 무역통계는 품목군 및 용도·종류별 상품을 구분한 체계로, 분류체계에 따라 HSK를 연계하여 자체분류
- 성질이나 용도가 유사한 상품을 종류별로 구분한 분류체계로, 우리산업의 실정에 맞게 HSK를 연계하여 완성('12.11월, 연구용역 결과 반영)
- HS 10단위를 성질별로 7大 대분류로 요약하여 분류
 - 수입 : 3大 대분류(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 수출 : 4大 대분류(식료 및 직접소비재, 원료 및 연료, 경공업품, 중화학공업품)

<분류체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계
수입	3	18	110	90	221
수출	4	17	117	45	183

- (용도) 관세청에서 확정치, 수시 수출입 동향 등에서 품목별 수출입 증감 추이 분석에 사용

□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샘플)

B	C	D	E	F	G	N	O	P	Q	V
HS10_SGN	HS2_SGN_NM	HS4_SGN_NM	HS10_SGN_NM	NEW_TMPR_LRCL	NEW_TMPR_LRCL_NM	NEW_TMPR_MDTCT	NEW_TMPR_MDTCT	IMP_TMPR_CD	CRNT_IMP_PRLST	CRNT_EXP_PRLST
0501000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사람 머리카락(가공하)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2100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돼지 털 · 멧돼지 털 · 오 돼지 털 · 멧돼지 털과 오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2902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돼지 털 · 멧돼지 털 · 오 염소 털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2909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돼지 털 · 멧돼지 털 · 오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5100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5901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깃털 가루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5909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6100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뱀과 혼코어(horn-core 골소(骨素)와 뼈(山酸)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690102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뱀과 혼코어(horn-core 소의 것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690109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뱀과 혼코어(horn-core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6902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뱀과 혼코어(horn-core 뱀가루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6909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뱀과 혼코어(horn-core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7101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아이보리(ivory) · 귀갑 상아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7109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아이보리(ivory) · 귀갑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1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산호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1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진주패각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2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청패각(전복)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3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첩패각과 지첩패각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4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마광패각(소라)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5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트로커스(Trocas) 패각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6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아고아(Agoya) 패각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7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민물패각(메가르나이아)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209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08009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000901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옹연향(ambergris) · 해황장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000902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옹연향(ambergris) · 해담즙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000903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옹연향(ambergris) · 해합개(蛇蛤)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000909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옹연향(ambergris) · 해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100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소의 정액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1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동물들의 피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201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돼지의 정액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209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301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소의 것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302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돼지의 것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309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4000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동물들의 건(腱)과 근(筋)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5011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정돈한 것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11995019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기타			20000000	원자재	21900101	기타 동물성 원료 및 인	2ZZ01	2. 원자재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0601101000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부 인경(蔕莖) · 고경(莖) 둘린 것			20000000	원자재	21010301	류립	2ZZ01	2. 원자재	2. 원료 및 연료
0601102000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부 인경(蔕莖) · 고경(莖) 박힌 것			20000000	원자재	21010302	박합	2ZZ01	2. 원자재	2. 원료 및 연료
0601103000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부 인경(蔕莖) · 고경(莖) 달린 것			20000000	원자재	21010390	기타 화회류	2ZZ01	2. 원자재	2. 원료 및 연료

1-3 보고양식 구성

< 최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개정 예시, '17.12.29>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5호, '17.7.25)

2. 개정 사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별지 1-2호)

-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샘플)

(갑지)



수입신고서

※ 처리기간 : 3일

[illegible]

< 최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개정 예시, '17.11.13>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4호, '17. 4. 4.)

2. 개정사유

-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해 간소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정비
-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①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 (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 (개정)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17. 1. 16. 시행) 현황(6월말) : 120,584건(82.2%)

②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가. 국제물류센터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지원

- (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물품의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하여 간소한 국외반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 국외반출신고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하고 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
- * 국외반출신고항목 축소(신고항목: [現] 57개 → [改] 27개)

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신고항목 축소

- 소액 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33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신고항목을 27개*로 추가 간소화
- * 대상: 적재항, 품명, 상표명, 성분, 운임, 보험료(신고항목: [現] 33개 → [改] 27개)

③ 해외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

- (현행)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
- * 많은 전자제품·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외 생산공장에 수입원자재를 원상태 수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어려움 호소

- 수출신고서식

- 17 -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관세법 개정반영, 수입신고 항목 명확화 및 간소화 등 필요시 개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에 대하여 세관업무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고시를 시행하며 시행일자에 따라 변경이력을 관리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u>사무처리</u>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35호, '17.7.25) 2. 개정 사유 □ 전자통관심사 등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 반품된 소액 수출물품(미화 150달러) <u>재반입</u>시 반품증빙자료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를 <u>전자자료</u>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 P/L 또는 전자통관심사 대상 중 신고수리 후 <u>첨부서류</u>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u>익월 10일까지</u> 제출토록 명확화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 파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의 기재방법 개선(별지 1-2호) ○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4. 신·구조문 대조표: “<u>불 입</u>” 5. 규제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	--

붙임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부.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표 1부.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관 세 청

수신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충청 각 시도청(관세과), 한국세관 각 과(직속기관 포함)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는 수입통관과 동일한 절차를 거침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2017.1.18. 통 관 기획 과)

1. 행정규칙명

-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70호, 2017-01-05)

2. 개정사유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반입장소 및 반입물품 지정 등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
- (반입 장소) 공항만 지역의 특허보세창고·종합보세구역·지정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창고 중 어느 하나
 - (반입 물품)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 (신고 절차) 보세구역 반입 확인 후 반입정보를 수출신고서에 기재
- * 기타 신고방법 등은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에 반영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 수출입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 작성(전수조사)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물품을 내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며 통계작성대상은 보고대상 전체 건으로 작성
 - 단, 물품의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닌 경우 제외*
- * 중계무역, 재수출조건부, 국제대회 반입물품, 외교관용품, 일시수출입물품, 견품, 광고용품 등

☐ 작성기준

- 수출입 신고 수리일자와 출항일자 기준 통계 공표
- 통계작성대상의 수정·보완
 - (월 마감 통계) 매월 통계 공표 시 직전 월까지의 모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통계 집계
 - (연 확정 통계) 매년 2월 초에 확정하며 연확정 통계는 조정하지 않음

3 통계작성 개편

□ 수출통계 발표기준 변경 ('03년도, '09년도, '14년도)

○ 무역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준일(신고수리일→출항일) 변경 검토

- 신고수리일 기준에는 미선적 수출물량, 거래처 신고취하분이 포함되어 통상 과다 계상되는 경향

→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의견수렴 결과, 출항일 기준 통계 변경이 곤란하므로 수리일 기준으로 발표하되 출항일 기준은 홈페이지에 병행 게시

【출항일기준 통계 작성 검토서】

- ◆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수리일기준 VS 출항일기준) 논란을 불식시켜 안정된 환경에서 수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함

가. 통계정확성

□ 수리일 기준 : 수출신고 수리후 취하 전까지 과대 계상

- '04년 취하비율은 0.46%(11.79억달러)이며, 취하사유의 36.07% (4.25억달러)가 실적위주의 신고(선적연기, 선거보류)에 기인함

□ 출항일 기준 : 적하목록 미승인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 수출신고서와 적하목록의 중량이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적하목록이 승인되지 않아 과소 계상됨
 - 특히, 분할선적(전체 수출의 약 3%수준 ex: 타이어, 자동차)은 선적 완료시점에 신고서와 적하목록의 중량이 일치하여 통계에 반영됨
- HB/L추가 및 MB/L정정 등 적하목록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이 전체 출항일 기준 수출금액의 0.22%(4억달러)에 달함

나. 통계신속성 검토

□ 출항일 기준은 익일 통계 집계 불가

※ 적하목록 제출기한 : 해상화물 적재전, 항공화물 출항후 익일 24시

- 당일 적하목록이 제출되어 승인된 건은 10.48%이며, 출항후 익일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도 84.02%에 불과함

다. UN 무역통계 작성지침 권고안

- ☐ 물품이 일국의 경제영역을 통과하는 시점에 통계에 계상함 ; 세관 통관자료에 근거한 자료수집 방법의 경우 기록시점은 세관에 (수출입) 신고가 등록된 날짜로 함(15절)

라. 국내 주요 기관의 견해 ('05.7.7 의견조회 결과)

기관	관심부분	결론
재정경제부	신속성, 정확성, 시계열의 일관성	병행 체재 유지
산업자원부	신속성, 시계열의 일관성	수리일 기준이 더욱 유용
통계청	신속성, 정확성, 시계열의 일관성	병행 체재 유지
한국은행	신속성, 시계열의 일관성, 국제수지 편제의 유용성	병행 체재 유지

마. 주요 교역대상국의 사례

☐ 미국

- 수리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나, 수출신고를 원칙적으로 출항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출항일 기준과 같은 효과를 냄
- ※ 출항전 신고대상 : 허가가 필요한 화학물질, 정부의 기밀사항 분류물품 등

☐ 일본

-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며, 이는 출항 전에 제출된 수출신고서의 출항예정 연월일에 의함

☐ 중국

- 수출신고서의 수리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함

바. 주관부서 의견 : 병행 체재 유지가 바람직

- ☐ 수리일 기준의 문제로 지적되던 수출거품이 거의 사라져 정확성이 확보되었으며, 신속성의 측면에서는 월등히 유용함
- 수출신고 후 취하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당월 취하 처리 비율도 갈수록 높아져 신고후 취하전까지의 과다계상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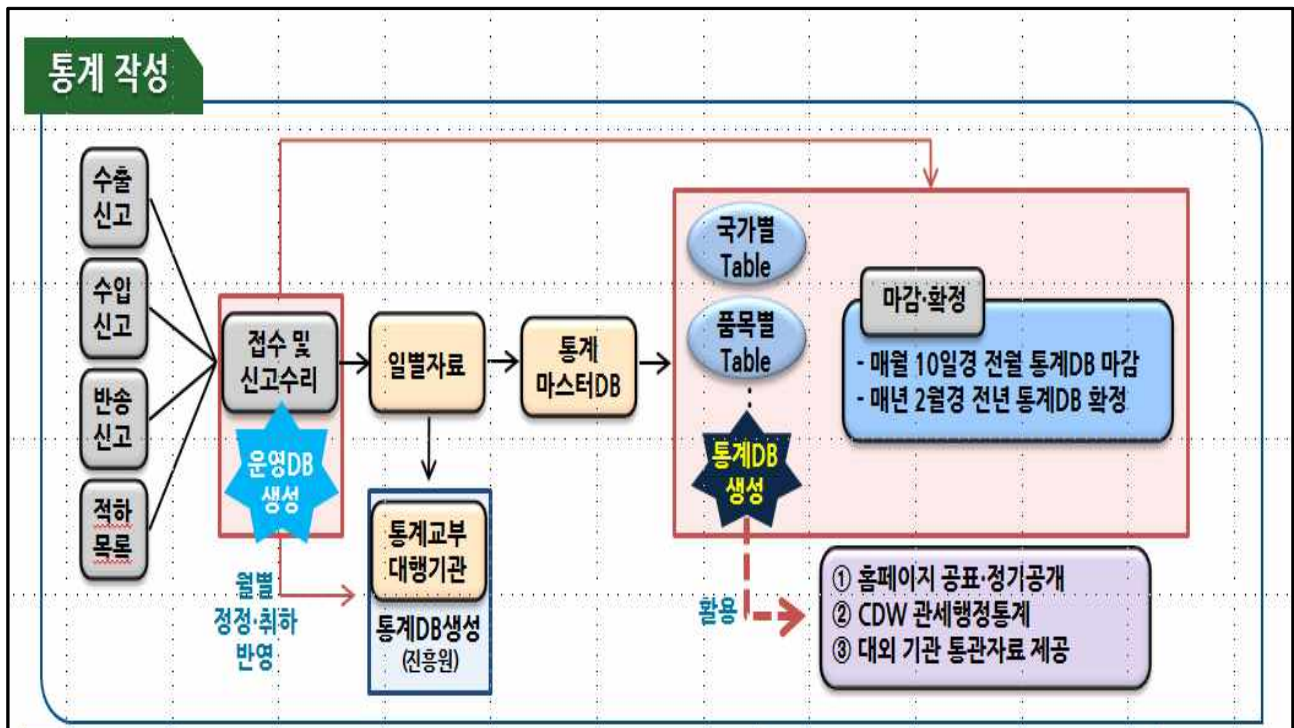
- 또한, 수리일 기준 수출통계는 상품의 세관 수출입 통관일을 수출통계의 계상시점으로 하라는 UN 무역통계 작성지침에 부합할뿐더러
 - 시계열상의 문제와 신속성을 이유로 국내 주요 수출입통계 이용기관에서 병행체제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음
 - '05년 실시한 용역(무역통계와 업체정보보호 방안연구)에서도 수리일 기준과 출항일 기준 수출통계의 병행을 지지함
- ⇒ 우리청에서는 수리일 기준 수출통계와 함께, 실제 출항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출항일 기준 수출통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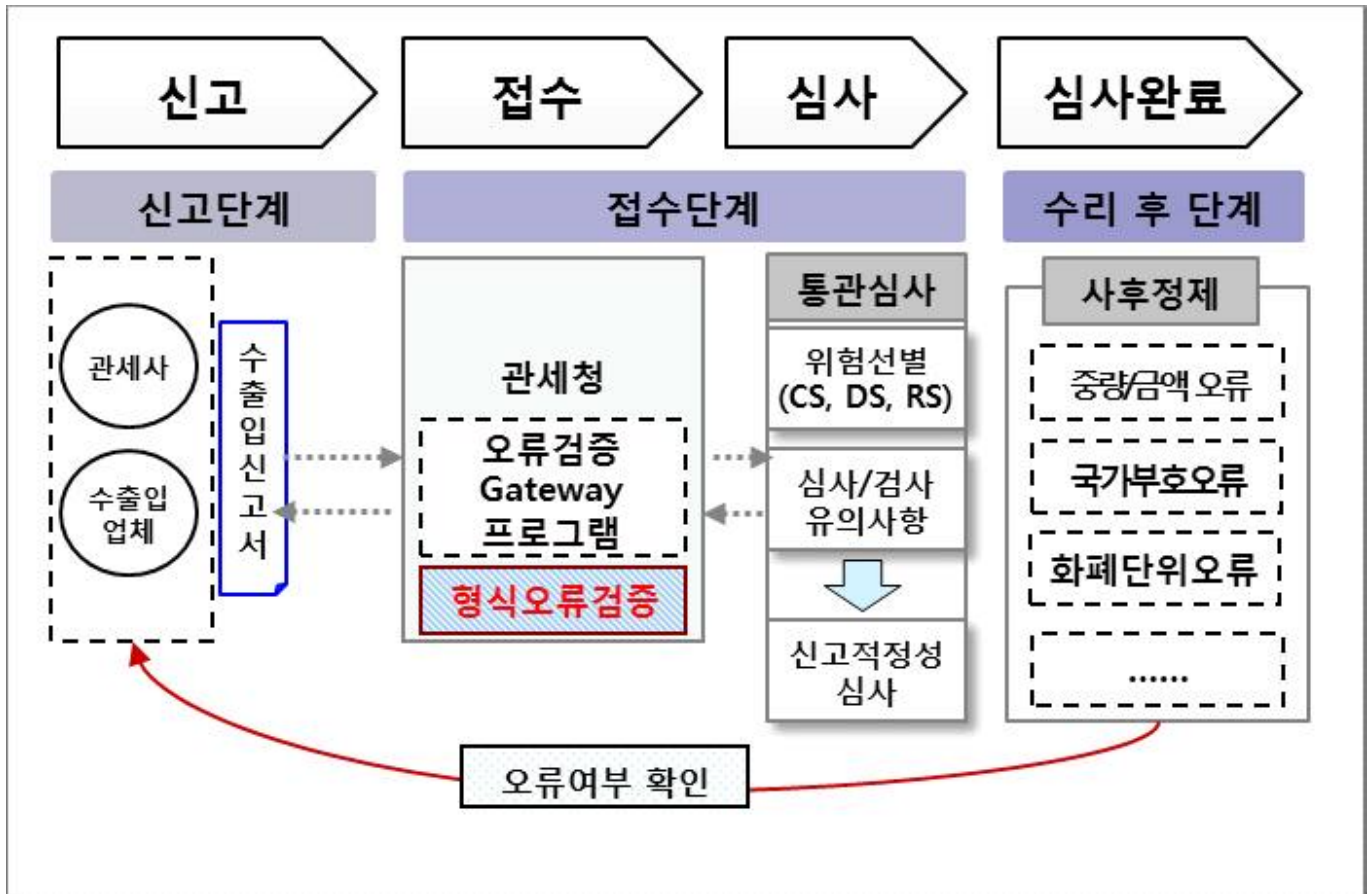
- 수출입업체, 신고대행인(관세사)의 수출입신고서 중 세관승인일자(수리일)를 기준으로 매월 5일~10일 사이에 월 통계 마감
- 신고서 작성은 신고인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활용
- 국가, 품목, 세관, 성질별·신성질별(관세청 분류체계) 등으로 집계테이블 생성
- 생성한 데이터를 관세청 무역통계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tat/>)에 전송
- 매월 15일 00:00분에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 오류점검

- 신고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 수출입신고서 정정 절차가 있으며 정정 후 다음달 15일 반영
- 전체자료(월 누적)를 마감작업 실행

○ 신고서 오류검증 절차



- 신고단계 : 신고인이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기 전에 전자문서의 유효성 검증
- 접수단계 : 항목간의 연관관계(세율, 원산지, 거래형태 등)을 검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고서 승인·정정·취하
- 수리 후 단계 : 승인 된 수출입 신고서의 중량, 금액 단위 등 오류의심 건에 대한 사후 확인

□ 집계자료 활용

- 관세행정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통계용 집계자료를 생성하며 관세행정자료와 통계자료는 통계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분리하여 관리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자료수집 교육

- 신고인(보고자)은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로서 별도의 교육은 불필요하나 신고서의 작성 양식, 제출항목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한 공유가 필요하여 관련고시를 수록한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개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신고서는 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및 ‘반송결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서에도 동일하다)

나.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신고시점에 제시된 원종과 동일해야 한다.

다.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일 ‘란’ 안에는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규격이 최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을출 상단에 “을지”라 표시한다.

마.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 의미가 없는 품목은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바. 원·부자재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주요 부품(A/S 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 방식(Knock Down 방식) 수출 물품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번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모델·규격 구분없이 일괄하여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나. 수입신고서의 형식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신고는 수입 신고서를 사용한다. 라.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L, 송품장 등을 확인 하여 수입신고서에 보완 기재한 후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시점에서 전산 입력토록 한다. 마. (4 계) 바.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 사.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 징수와 무역통제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의미가 없는 품목의 세번 및 수량, 중량, 포장 등으로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아. 결제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자(화주)가 운임, 보험료를 구분하여 신고하되 (CIF, DDP 등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결제조건인 경우는 제외) 관세사 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	---

3. 현장관리

□ 보고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최초 수출입신고서는 별도의 완료시점은 없으나, 수출신고 후 미선적, 정정대상 신고건의 정정기간 경과 등 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 수출화주 등에는 관세법에 따라 가산금, 가산세,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

○ 수출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샘플)

○ 수입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샘플)

<수출입신고서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스템>

- 27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규정 운영

- 수출입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관련 통계자료의 대외 신뢰도 제고
- 항목별 오류점수를 부과하며 납세자정보 등 중요항목 오류 시 높은 점수 부과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의뢰인에게 통보하거나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95 - 912호(95.1.9.)
관세청고시 제95 - 946호(95.12.1.)
관세청고시 제96 - 79호(96.12.20.)
관세청고시 제98 - 70호(98.12.3.)
관세청고시 제2000 - 7호(2000.3.30.)
관세청고시 제2001 - 1호(2001.1.12.)
관세청고시 제2005 - 26호(2005.8.5.)
관세청고시 제2006 - 3호(2006.1.16.)
관세청고시 제2007 - 4호(2007.2.28.)
관세청고시 제2009 - 41호(2009.8.20.)
관세청고시 제2010 - 49호(2010.6.10.)
관세청고시 제2012 - 39호(2012.12.17.)
관세청고시 제2014 - 22호(2014.3.12.)
관세청고시 제2014 - 90호(2014.8.5.)
관세청고시 제2017 - 44호(2017.7.28.)
관세청고시 제2017 - 83호(2017.12.29.)
관세청고시 제2018 - 00호(2018.00.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2조 및 「관세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고시 제1조(목적) 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서"란 수출입신고서 및 반송신고서를 말한다.
2.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3. "오류점수"란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신고서 항목별로 정하여 부과하

는 별점을 말한다.

4. "오류점수비율"이란 신고인 및 화주별로 전(前) 분기 동안 총 수출 또는 총 수입 신고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점수의 비율(전분기 오류점수 / 전분기 총 수출(입) 신고건수 * 100)을 말한다.
5. "관할지세관장"이란 관세사와 화주직접신고업체의 화주가 신고자부호를 신청·등록한 세관장을 말한다.

제3조(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① 신고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관세사일 때에는 통관을 의뢰하는 화주의 통관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서류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 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관세사, 화주직접신고업체, 개인신고인 등) 귀책사유
 2. 신고의뢰인(수출입 화주, 납세의무자, 제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귀책사유
 3. 거래당사자인 외국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 등의 귀책사유
 4. 세관(담당자 등) 귀책사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V.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수출입신고서 입력 항목별 부호 내역을 간행물(연1회)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관세청 무역통계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tat>)에 공개
- 무역통계 부호 공개(샘플)

50 제2부 무역통계 부호

포장종류 부호(405) 51

(5) 항구 및 공항 부호(401)

부 호	지	역	부 호	지	역
CHN	전	주 공 항	KRHSN	화	순 항
CJJ	창	주 공 항	KRINC, INC	인	천 항
CJU, CHH	계	주 공 항	KRJPH, JPH	강	승 포 항
GMP, SEL	김	포 공 항	KRKAG	강	릉 항
HDN	천	주 (사천) 공 항	KRKAN, KAN	광	양 항
ICN	인	천 공 항	KRKN	감	천 항
KAG	강	릉 공 항	KRKH, KHH	고	현 항
KIH	김	해 공 항	KRKJE	고	계 항
KPO	포	항 (공) 항	KRKOJ, KJH	고	경 항
KUV, KUJ	군	산 공 항	KRKPO	포	항 항
KWH, KWJ	광	주 공 항	KRKUV	군	산 항
MPK	목	포 공 항	KRMAS, MAS	마	산 항
MWX	무	안 공 항	KRMIP, MIP	미	포 항
OSN, OGH	오	산 공 항	KRMOK, MOK	목	포 항
RSU	여	수 공 항	KRMUK, MUK	목	호 항
SHO	속	초 공 항(삼척항)	KROKK	옥	계 항
SSN	성	남 공 항	KROKP, OPH	옥	포 항
SWU	수	원 공 항	KRON, OSH	온	산 항
SYS	순	천 공 항	KRPTK, PTH	평	택 항
TAE, TAH	대	구 공 항	KRPUS, PUS	부	산 항
USN	울	산 공 항	KRSCP, SPH	삼	천 포 항
WJU	원	주 공 항	KRSHO, SUK	속	초 항
YEC	예	천 공 항	KRSPO, SGH	서	귀 포 항
YNY	양	양 공 항	KRSUK	삼	척 항
IDG	정	석 비 행 장	KRTAN	대	안 항
KRDRS	도	라 산 육 로	KRTGH	동	해 항
KRGSG	고	성 육 로	KRTJI, TJI	당	진 항
KRBOR	보	령 항	KRTSN, DSH	대	산 항
KRBUK, DHH	북	평 항	KRTYG	통	영 항
KRCHA, CHA	계	주 항	KRUSN, USN	울	산 항
KRCHE, CHE	진	해 항	KRWND, WDH	완	도 항
KRCHS, CHH	가	천 항	KRCHS, CHH	가	천 항

(6) 포장종류 부호(405)

코 드	내 용	비 고
BA	Barrel(통)	
BC	Bottlecrate(맥주 박스 모양의 상자)	
BE	Bundle(더발, 꾸러미 등 묶음포장 단위)	
BG	Bag(자루, 부대)	
BJ	양동이	
BL	Bale(광목, 원단 등 감아놓은 상태)	
BR	Bar(막대)	
BV	Bottle, bulbous(전구모양의 병)	
CA	Can(캔)	
CH	Chest(나무상자 패)	
CJ	Coffin(관)	
CL	Coil(코일, 나선형으로 돌돌 감은 것)	
CR	Wooden box, Wooden case 대체용기	
CS	그릇, 상자, 케이스	
CT	Carton(판지로 만든 상자)	
DR	Drum(드럼통)	
GT	기타 개수물 헤아릴수 있는 물품	
HH	휴대품	
IZ	Ingots(주철괴)	
NT	Net(그물)	
OU	외포장이 없는 개, 두, 필, 대, 기, 책, 화 등	
PG	Plate(판)	
PI	Pipe(파이프)	
PU	Traypack(뚜껑없는 칸막이 상자)	
RL	Reel(줄 감는 틀)	
RO	Roll(두루마리)	
SK	Skeletoncase(골조상자)	
VG	Bulk, gas(at 1031 mbar 15 nC) (기체상태의 벌크)	
VL	Bulk, liquid(at normal temperature/pressure) (액체상태의 벌크)	
VC	Bulk, solid, large quantities("modular") (대량과장량의 벌크)	

□ 보고자료의 전산입력방법

- 수출입신고, 화물 등 업무별로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안내
<신고서 작성 매뉴얼 예시>

④ 주요 기능 설명 - 신고서 작성 목록

신고서 작성 목록

[illegible]

- 업무별 신고서 서식 조회/선택

4 주요 기능 설명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UNI-PASS 전자신고 전자접수 업무지원 정보조회 불권반영장구 AEO 고지서발 피의제이치 [연립 5월 4주 W/L] Search Q

전자신고 * 수입신고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 > 수입신고서

공통사항1 공통사항2 인사말 정부과달

초기회 관세 조사관 업무(5년)내역 관물1번 관물5번 관물12번 관물23번 관1회관세일 관2회관세일 관3회관세일 관4회관세일 관5회관세일

기본 신고서 조회 Q 조회

*신고번호 42895 - 16 - **확인** *신고일자 2016-01-24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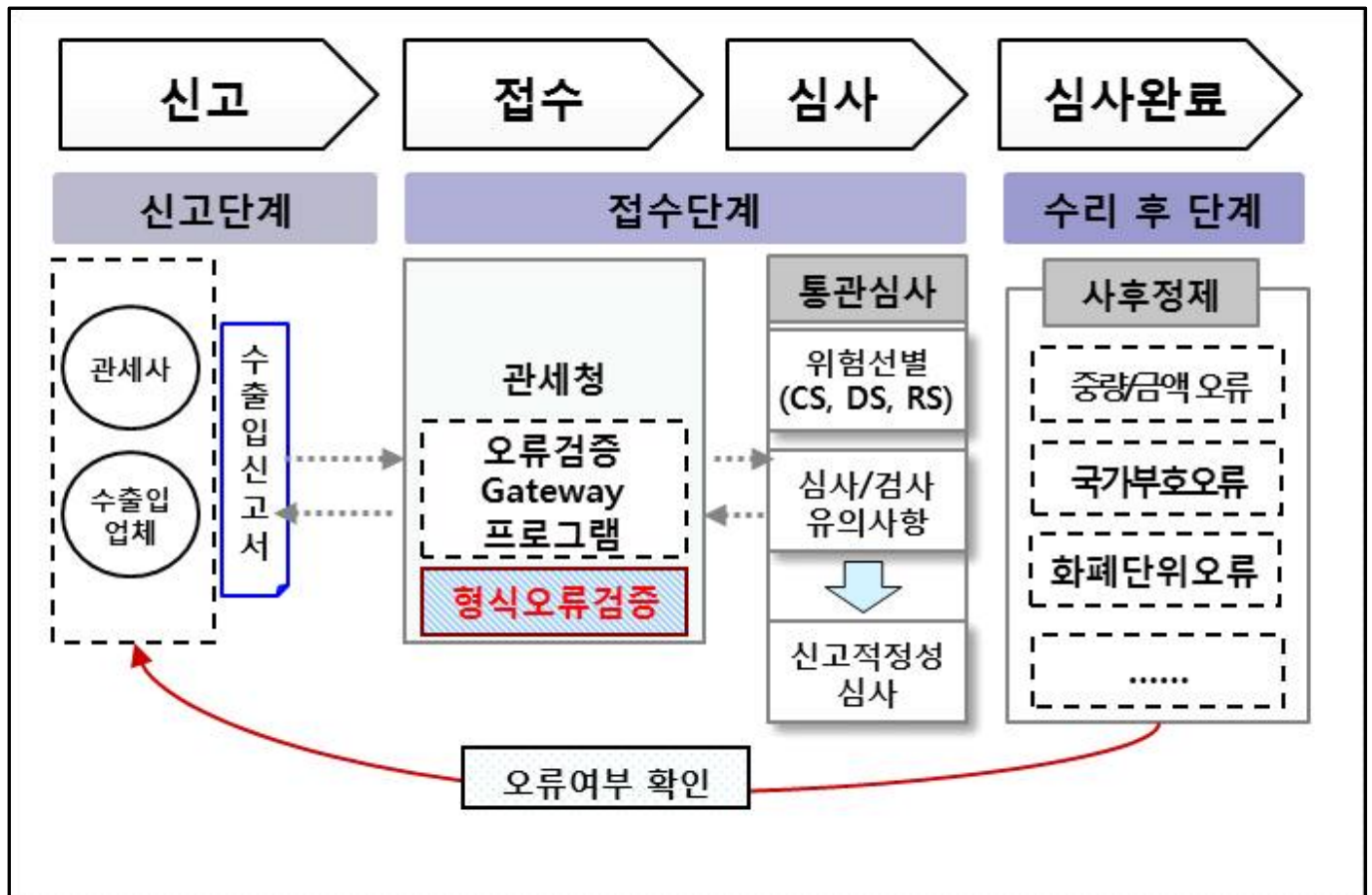
*성명/성명 관물관리팀장김경숙

*전화번호(내선) () *이메일 @ -한락- ✓

목록 **미리보기** **임시저장** **일괄전송저장** **삭제** **전송**

- 기존 신고서 조회(불러오기) 기능 제공
- 미리보기(인쇄) 기능 제공
- 임시저장 기능 제공
- 일괄전송을 위한 일괄전송저장 기능 제공(임시문서함에서 일괄 전송)

□ 신고서 오류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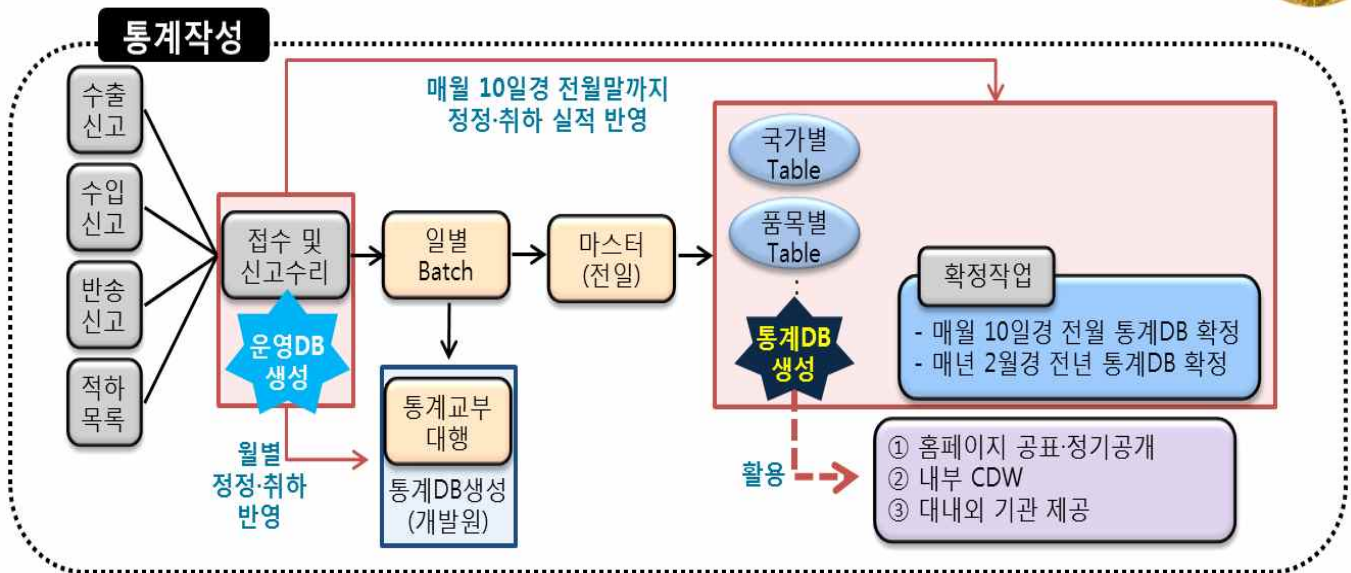
- 신고단계 : 신고인이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기 전에 전자문서의 유효성 검증
- 접수단계 : 항목간의 연관관계(세율, 원산지, 거래형태 등)을 검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고서 승인·정정·취하
- 수리 후 단계 : 승인 된 수출입 신고서의 중량, 금액 단위 등 오류의심 건에 대한 사후 확인

2. 자료내검

□ 보고자료의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 수출입신고는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기록으로 중복, 누락 가능성은 없음
- 다만, 수출입신고 없이 반출입하는 경우는 밀수출입죄로 처벌하고 몰수, 추징, 국고귀속 물품은 통계계상 제외(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 제7조제1항)

□ 무역통계 구성도



- (매일) 수출입신고서 수리된 건에 대하여 익일 00:00시부터 일괄수행 전산프로그램(Batch Program)으로 통계집계
- (매월) 수출입무역통계 공표를 위해 익월 5일경~14일까지 무역통계 월 마감 수행
- (매년) 전년도 통계 확정 공표(매년 2월 중순)를 위해 무역통계 연 확정 수행

□ 행정자료의 정정 이력관리

- 자료 에디팅 시스템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물품은 관세감면(본할납부, 용도세물적용)물품으로 ()까지 사후관리를 함.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귀사의 사후관리물품

전제 0건 | 페이지당 20

차수	구분	정정일자	담당자
정정사유			

■ 이력간 차액 계산내역

차수	관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부가세

품목사항

전제 9건 | 페이지당 10

란번호	HS부호	
001	6109-10.1000	T-SHIRTS
출력		UNIFORM FOR 2014ASIAN GAME
002	6103-49.0000	SHORT PANTS
출력		UNIFORM FOR 2014ASIAN GAME
003	6115-99.0000	SOCKS
출력		UNIFORM FOR 2014ASIAN GAME
004	6402-99.9000	SHOES

□ 신고오류 분석 결과(월 단위 분석 중)

수출입통관 신고오류 예상자료 선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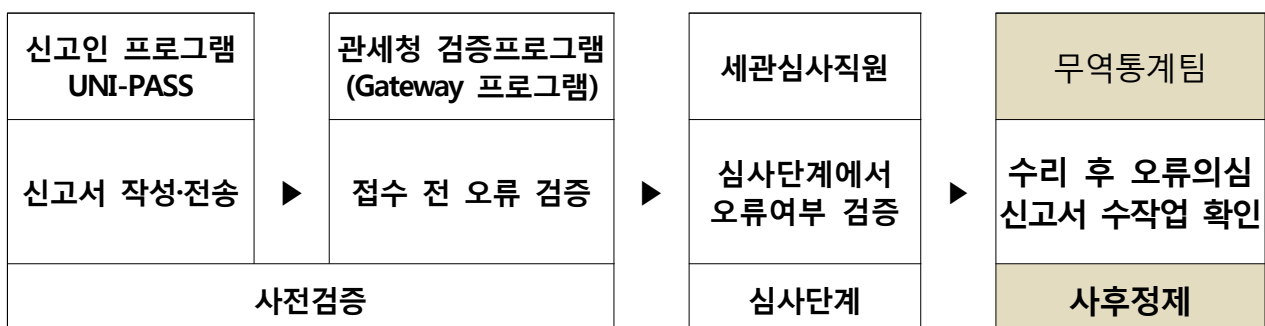
오류구분	HSCODE	품명	오류선별근거	오류내역구분	정정예정내역	업체 및 관세사 확인
과다오류(과)	8517701029	PARTS FOR MOBILE PHONE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29회 확인내역98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7803901000	POWDERS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내역100kg 확인내역101ton	○ 소수점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7210309000	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S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내역323kg 확인내역324ton	○ 소수점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4810929000	DUPLEX BOARD WITH GREY BACK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내역18kg 확인내역17ton	○ 소수점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4804110000	KRAFT LINER PAPER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내역50kg 확인내역50ton	○ 소수점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2518100000	DOLOMITE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건500001ton 확인내역5001ton	○ 소수점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8529909990	LCD,MODULE-TFT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12회 확인내역40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9013801930	LCD,MODULE-TFT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5회 확인내역16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9013801930	LCD,MODULE-TFT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23회 확인내역78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4804110000	KRAFT LINER BOARD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내역144kg 확인내역144ton	○ 소수점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8504102000	RATED 0.5 HORE THAN 225 BUT NOT MORE THAN 50A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11회 확인내역100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854370909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9회 확인내역98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8544422090	OTHER PLASTIC INSULATED WIRE	평균단가 추이분석에 따른 비정상적 신고건 선별	신고금액	신고내역17회 확인내역190건	○ 화폐단위 입력 오류
과다오류(과)	2106909099	OTHER	순중량과 총중량과의 비정상적 차이	순중량	신고내역2kg 확인내역18ton	○ 소수점 입력 오류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Outlier) 식별 및 조치

- 신고서 수리 후 중량, 금액 등 이상치(Outlier)를 전산선별하여 신고인에게 확인
 - 특정품목의 수출입 중량의 급격한 증감이 있는 경우 확인하고 금액대비 중량차이가 크거나 중량대비 금액차이가 큰 경우 선별하여 신고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침

<수출입신고 오류검증 절차>



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통계표 및 그래프

- 모든 공표 통계표 별 또는 선택항목별로 그래프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무역통계 홈페이지(샘플)



- 정기간행물(샘플)

1.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492억 달러 기록

- 반도체(52.9%) · 철강제품(22.3%) · 석유제품(28.8%) · 승용차(14.3%) · 선박(13.4%) · 무선통신기기(5.8%) 등은 증가, 자동차부품(Δ7.4%) · 액정디바이스(Δ9.6%) · 가전제품(Δ2.8%) 등은 감소
- 중국(24.5%) · 미국(4.8%) · EU(10.5%) · 베트남(53.1%) · 일본(21.5%) · 중동(4.2%) 등 주요국가 대부분 증가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 (수출중량)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1,716만 톤

(만 톤, 전년 동월 대비 %)

구 분	'16	'17.1	2	3	4	5	6	7	8	9	10	11	12	'18.1
중량	19,468	1,621	1,615	1,753	1,574	1,650	1,657	1,676	1,696	1,933	1,402	1,692	1,719	1,716
(증감률)	Δ0.2	5.0	2.0	5.7	Δ8.5	6.3	2.0	Δ1.9	7.8	16.9	Δ9.1	2.4	3.8	5.8

* 순중량 기준 (포장, 용기 물량 제외)

일 러 두 기

1. 자료원

무역통계는 세관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 사항을 처리한 후 전자방식에 의하여 관세청 주전산기에 전송, 등록되는 자료를 기초로 한다.

- 수출입 신고수리
- 수입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 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수리 및 수출신고수리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 수출신고수리

2. 계상범위

물품이 국가 간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무역통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무역통계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법 제208조에 의하여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
- 법 제212조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물품
- 법 제160조에 의하여 폐기된 물품
- 법 제282조에 의하여 몰수 및 추징된 물품
- 법 제1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 중개무역되는 물품
- 수입수리전에 반송되는 물품
- 결제수단으로 반출입되는 금, 은, 유가증권, 은행권 및 주화
- ATA CARNET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 검사·수리목적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
- 외교관 용품
- SOFA 협정에 의한 면세대상 물품
- 대북 반출입 물품
-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
-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
- 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 기타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3. 통계계상 시점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계계상 시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자로 하였다.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작성기준 및 방법

- (기본원칙) 국제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UN 국제무역통계 개념과 원칙을 준수하며 우리나라의 자원량의 증감이 있고 경제선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의 이동을 포함
 - HS Code를 기준으로 수출입 물품을 분류
- (자료의 범위) 거래형태로는 보세판매장 반출입, 중계무역, 수리전 반출물품, 외교관 물품 등은 무역통계에서 제외되며 지역범위로는 대북 반출입 물품도 제외 됨
- (금액관련 기준) 관세청장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에 의하여 각국의 화폐를 원화로 환산한 후 원화를 다시 US\$로 환산하고 환산된 US\$가 수출입신고시 적용
- (자료의 특성 및 편집) 세관통관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며 수량, 중량, 원산지/목적국 등의 물품성질을 고려하며 수출입신고서의 신고수리일과 출항일을 모두 공표함
 - 입력된 자료의 오류체크는 품목번호별 평균단가를 활용하며 오류예상 자료를 추출확인 후 오류로 확인된 자료는 월별/연도별 무역통계 공표 전에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점과 공표시기

- 무역통계의 시의성, 적시성을 고려하여 10일단위(매월1일, 11일, 21일) 발표 검토(‘13.7월)

무역통계 잠정치 10일단위 발표 개선(안)

(무역통계센터, '13.7.4)

□ 배경

-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무역통계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

□ 무역통계 잠정치 공표 현황

구분	주제	공표기관	주기	공표방식	발표기준	주요내용
잠정치	통관 실적	관세청	10일단위 (10/20발표)	홈페이지	신고수리일 (출항일은 보좌)	수출입액 단순집계
	수출입 동향	산업부	매월(1일)	언론보도	신고수리일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분석

□ 잠정치 발표 개선 방안

- (제1안) 수출입 누계 요약분 보완 발표
 - * 수출·수입 당월누계 => 전월누계, 당월누계, 당년누계, 증감율 표시
 - (제2안) 확정치의 요약분 형식 발표(1매)
 - * 수출입 동향 요약,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동향요약, 무역수지 동향 등
- ⇒ 10일 단위 통계는 월단위에 비해 효용성이 적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홈페이지 10일 단위 발표내용을 보완(내용 추가)하여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계획

- 전산시스템(홈페이지) 개편(7월초)
- 개편내용 홈페이지 게재(매월 1일, 11일, 21일)

-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국가통계 변경 승인('16.8.1일부터 공표)

무역통계 변경승인잠정치 및 속보 추가 기획서

1. 작성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7, www.customs.go.kr)

2. 무역통계 승인일자 : 1976년 7월 14일(승인번호 제13401호)

3. 통계의 종류 : 일반통계

4. 법적근거 : 「관세법」 제3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5. 작성목적

- 우리나라와 외국간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수출, 수입, 무역수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무역·산업의 경쟁력 진단·분석 및 대책수립에 활용
- 수출입동향 자료를 통해 각 정부기관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경제전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의 무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기구와의 무역현황을 비교하고 통상협상에 필요한 수출입통계를 제공
-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을 신속하게 공표하여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전략 및 정부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6. 작성대상

- 모집단 : 수출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에서 발생하는 통관기초자료
- 대상규모(15년 기준) : 수출신고서 7,439천건, 수입신고서 14,460건
- 대상지역 : 전국세관의 수출입 통관기초자료

7. 작성주기, 기준시점, 조사기간(현행 및 추가변경후)

구분	현행	추가변경후
작성주기	월간(月刊)	월간 및 10일간(순간, 旬刊)
기준시점	전월 1일 ~ 말일	①전월 1 ~ 말일(확정치) ②전월 1 ~ 말일(잠정치) ③당월 1 ~ 10일(11일 속보) ④당월 1 ~ 20일(21일 속보)
조사기간	익월 1 ~ 14일	①익월 1 ~ 14일(확정치) ②익월 1일(잠정치) ③익월 1 ~ 10일(11일 속보) ④익월 1 ~ 20일(21일 속보)

8. 작성항목(현행 및 추가변경후)

- 월 확정치 수출입동향(현행)
 - 수출입총괄, 품목별 수출입실적, 국가별 수출입실적, 성질별 수출입 실적, 신성질별 수출입실적,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대륙별 수출입 실적, 경제권별 수출입실적, 세관별 수출입실적, 종류별 수출입실적,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 남북교역, 소재지 지역별무역
- 월 잠정치 수출입동향(추가)
 - 총괄(수입금액·수출금액·무역수지) 및 월별동향
- 1~10일 수출입동향 속보(추가)
 - 수출입총괄, 품목별 수출동향, 국가별 수출동향
- 1~20일 수출입동향 속보(추가)
 - 수출입총괄, 품목별 수출동향, 국가별 수출동향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샘플)

- 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tat/>)의 공지사항에 공표일정 공개

수출입무역통계 무역통계소개 무역통계조회 수입가격공개 무역통계분석 통계자료실 기업특성별무역통계 English 메뉴전체보기

통계자료실 공지사항 Home > 통계자료실 >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제목	무역통계 및 무역경기 확산지수 등 공표일정 안내	
보도자료	등록일	2017-11-10	작성자 관리자
정기간행물	담당부서	통관기획과	조회수 85
	내용	◆ 무역통계 ○ 전월 마감 무역통계 공표일정 : 매월 15일 ○ 전년도 확정지 무역통계 공표일정 : 매년 2월말 ○ 전월 잠정치 수출입동향 : 매월 1일 ○ 당월 수출입동향(속보지) : 매월 11일, 21일 ○ 월간 수출입동향 : 매월말일(정기간행물, 25일~30일) ○ 무역통계 연보 : 매년 6월(정기간행물) ※ 참고) 무역통계는 무역통계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조회메뉴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무역통계 작성·발표

- 발표시기 또는 집계기준 변경 시에는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공지

3-2 시계열 비교성

- ☐ 관세청 분류체계(성질별·신성질별)에 따른 시계열 단절은 없으나, 개별 품목번호(HS Code)의 변경에 따라서는 시계열 단절이 있음

3-3 국가간 비교성

- ☐ 다른 국가의 무역통계 공표 현황

국가	공표기관	기관특성	공표항목
한국	관세청	한국 무역통계 주관기관	▪ 품목정보: HS(10단위), 신성질별정보 ▪ 2000년 이후 월, 분기, 연별 통계 ▪ 항만, 공항별 무역통계(HS 10단위) ▪ 한국 지역별 수출입통계 ▪ 국가별/경제권별 수출입통계 ▪ 세관별 수출입통계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등 무역지수 ▪ 무역동향 분석정보/보고서
미국	상무부 Census국	미국 무역통계 주관기관	▪ 품목 정보: HS(10단위), NAICS(6단위) ▪ 1992년 이후 월, 분기, 연별 통계 ▪ 항만, 공항별 무역통계(HS6단위) ▪ 미국 지역별 수출입통계 ▪ 미국산업분류체계(NAICS) 데이터 ▪ 계절조정 무역통계 공표
	상무부 국제무역국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	▪ 품목 정보: HS(4단위),NAICS(3단위), SITC(3단위) ▪ 품목별/산업별 통계정보 ▪ 제조업/비제조업 분류 무역통계
중국	중국 해관총서	중국 무역통계 주관기관	▪ 국가별/지역별, 경제구역별/세관별 ▪ 무역성질(일반, 보상, 가공 및 조립무역 등), 기업특성별(국유,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본	재무성 관세국	일본 무역통계 주관기관	▪ 품목정보: HS 9단위 ▪ 일본 지역별 통계 ▪ 선박, 항공기 통계 ▪ 특수무역통계 정보
	일본관세 협회	재무성에서 무역통계 입수 /무·유통서비스	▪ 품목별, 국가별, ▪ 관세율 정보 ▪ 무역정보 발간물 발간
EU	EUROSTAT	EU 회원국 통계 제공	▪ EU 회원국간 통계, 비EU 국가간 통계 ▪ 품목정보: CN 8단위, HS 6단위, SITC, BEC ▪ 상품통계, 서비스통계(2010년 이후) 제공
영국	조세-관세 청	영국 무역통계 주관기관	▪ 품목정보: HS 6단위, CN 8단위, SITC ▪ 영국 항구별 통계

국가	공표기관	기관특성	공표항목
	(HMRC)		1996년 이후 통계 제공
캐나다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무역통계 주관기관	- 품목정보: HS 6단위, 북미상품분류(NAPCS), 표준산업분류(SIC) - 계절조정 무역통계 공표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	- 품목정보: HS 6단위, NAICS 5단위 - TDO 시스템: 무역정보 제공 - Canadian Importers Database 운영
호주	호주 통계국	호주 무역통계 주관기관	- 품목정보: HS 8단위, SITC, BEC - 상품 및 서비스무역은 익월 21일후, BOP 통계는 2개월후 공표

□ 국제기구 무역통계 제공 현황

- 연 확정치 통계 발표 후 매년 3월경 UNSD(UN통계처)에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에 등록 관리중
- (제공항목) HS Code 6단위별, 국가별, 수출입구분, 중량, 금액

□ 국제기구 무역통계 공표 현황

공표기관	기관특성	공표항목
UN	250여 국가의 품목별, 국가별 무역통계 제공	- 수출입 규모, 순증량, HS(2/4/6단위) 등 제공 - 연간 데이터는 1962년부터 월별 데이터는 2010년부터 제공 - SITC, HS 기준에 따라 품목 분류 제공 - 재수출, 재수입 통계정보 제공
WTO	전 세계 무역통계 및 관세율 정보 제공	- 통계 항목 : 상품거래, 서비스무역, 관세, 비관세 조치(NTMs), 글로벌가치사슬(GVCs) - Trade Profiles : 국가별 무역통계 관련 정보 제공 - Tariff Profiles : 국가별 관세율 관련 정보 제공 - 통합무역 정보 포털(I-TIP) 운영 :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위생검역, 기술규제,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수량규제 등)
IMF	정부 재정, 금융 안정성, 국제 무역, 환율, 국제수지,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 국가별 수출입 통계 정보에 대해 도표 및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제공 - 연간데이터는 1947년부터 월별, 분기별 데이터는 1960년부터 자료 확인 가능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ITC	UN과 WTO 산하의 국제무역센터로 중소 수출업체 업무 및 무역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전 세계 220여 개국의 제품별 수출입 규모, 주요 수입기업 등의 정보 제공 2000년 이후 무역통계 제공 - 전 세계 및 국가별 제품별 수출입액, 연도별 수입 동향, 증가율 및 점유율 비교 분석 정보를 시각화 제공 - 제품별 수입국 순위, 국가별 수입규모, 단위가격, 증가율 및 관세율 정보 등을 제공 - 무역지표(시장점유율, 성장률 등)
OECD	주요 경제 지표, 국제무역 및 상업, 교육, 과학, 기술 및 연구 개발, 노동시장, FDI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	- OECD 회원국의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통계 정보 - 도표 및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제공 -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국제무역 및 국제수지 통계 - Trade in Value Added (TiVA) :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지표 제공 - 국제운송 및 보험 비용(ITIC)
World Bank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국제기구의 통계정보를 연계하여 통합무역정보 제공	- UN COMTRADE : 무역통계 - 수입, 관세정보, NTL별 관세율 및 비관세수단 - NTL별 MFN 실행세율, 협정세율 및 Bound tariffs - 관세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추정 정보 등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상품수출입 통계

- 한국은행의 상품수출입 통계는 관세청 수출입통계와 유사
 - 다만 통계작성 국제기준의 차이, 통계계상조건, 금액 반영 등이 상이하여 오차 발생
<14년도 분석자료 일부>

6 現 무역통계의 특성 [중계무역마진 미반영]

□ [중계무역 마진] 최근 4년간 중계무역 순수출*이 169% 증가

* 단위(억 불) : ('11) 51 → ('12) 101 → ('13) 146 → ('14) 137

- (BPM6기준 상품수지) 중계무역 순수출의 계상으로 무역통계 대비 '14년 기준 수출액 8.6% 증가, 무역수지 455억불 증가

<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6) >

- (개편배경) IMF는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BPM6) 공표('10.1월), 한국은행 '14.3월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 이행 완료
- (주요내용) (前) 중계무역 수출입수지를 서비스수지로 계상 → (後) 소유권이 변동하는 거래이므로 수출(수입)으로 계상(통관 신고된 물품을 대상으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과는 차이가 있음)

< 무역통계와 BPM6상품수지 비교 >

(단위: 억 불)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출입 무역통계 (A)	수출	4,664	5,552	5,479	5,596	5,727
	수입	4,252	5,244	5,196	5,156	5,255
	수지	412	308	283	440	472
BPM6 상품수지 (B)	수출	4,638	5,871	6,035	6,182	6,213
	수입	4,159	5,580	5,541	5,354	5,286
	수지	479	291	494	828	927
	중계무역 순수출	52	51	101	146	137
차이 (B-A)	수출	-26	319	556	585	486
	수입	-94	336	345	198	31
	수지	67	-17	211	387	455

- 관세청 무역통계 범주내에서는 국가, 지역, 품목 등을 분류한 통계의 전체 수출입 금액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

4-2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 통계와 확정치 통계 차이가 발생하나 이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안내는 없음

- 잠정치와 확정치 통계 차이는 신고 오류에서 기인하며 정확한 수출입신고 유도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사전오류검증, 사후정제 등) 측면에서 검토 중

<잠정치와 확정치 통계차이 개선방안, '12.4월>

3월 지경부(잠정치)와 우리청(확정치) 수출통계 차이관련 보고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2.4.13.(금)				
□ 12.3월 지경부 수출입 잠정치 통계와 비교				
○ '12년 3월 수출입 통계 잠정치(지경부 발표)와 비교한 결과,				
- 수출입 신고 정정 및 신고취하 내역 등이 반영되어 무역수지는 잠정치(지경부 발표) 보다 1.2억불 증가				
- 수출*은 잠정치 대비 약 0.2억불 증가, 수입은 약 1억불 감소*				
* 신고금액의 신고, 심사 및 수리후 3단계 오류관리를 통해 잠정치와 차이 크게 감소				
* 주요감소 원인 : 일반적인 신고정정 및 취하 등이 반영된 실적이며, '11년도 지경부와 우리청 발표수치 차이는 월평균 수출 5억불, 수입 0.9억불로 예년과 동일 수준				
< 수출입실적 확정치와 잠정치 비교> (백만 달러,%)				
구 분	2012년 3월			
	확정치(A)	잠정치(B)	차이(C=A-B)	비율(C/B)
수출액	47,382	47,361	21	0.04
중감률	△1.4	△1.4		
수입액	44,934	45,033	△99	△0.22
중감률	△1.4	△1.4		
무역수지	2,448	2,328	120	5.15
※ 수출신고금액 3단계 오류관리 시스템 구축사항				
○ 신고·심사·수리후 3단계에 걸쳐 철저한 오류검증				
(1) 신고단계	→	(2) 심사단계	→	(3) 수리후
수출입신고시 신고금액이 xx인 경우 경고팝업		과거실적대비 신고금액 과다한 경우		품목·기업별로 과거 평균단가와 차이 발생 시 검증

5 일회성 수정

□ 품목번호, 국가부호, 우편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여 통계차이 발생

- 과거 통계와 비교하여 급격한 수치증가가 있는 경우 확인 후 신고서 수정조치 진행
 - ('17.6월) 국가부호 입력 오류→국가부호 수정 신고 및 삭제된 국가부호 DB 반영 조치
 - ('18.1월) 국가부호, 우편번호 입력오류→국가부호, 우편번호 수정 신고 및 사전오류 검증 전산 프로그램 개선

<통계 집계 오류 검토보고서>

통계계상 및 국가부호 오류로 인한 무역통계 조치 경과 보고

('17. 6.16 회, 통관기획과)

□ 오류 원인

- (통계계상오류) 수입통계 계상 시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에는 적출국으로 계상하는 조건 누락 오류 발견('17.5.22)
 - (국가부호오류) 4세대 개통 후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적출국 등에 유효하지 않은 국가부호 입력 오류 발견('17.5.24)
 - 국가부호 오류 신고 시 신고인에게 전산 오류통보 조건 누락
- <수입신고서 국가부호 오류 유형>

오류국가부호	PO	MI	NT	YM	BQ	TP	PZ	CS	YU	CT	소계
유효국가부호	PS	만료	만료	MK	만료	TL	PA	RS	ME	만료	만료
'16년 건수	115	10	5	23	1	145	3	24	11	11	348
'17.5월 건수	93	16	4	11	-	2	3	14	5	1	149

※ 총 497건 중 284건이 통계에 영향(원산지, 적출국 오류)을 주는 것으로 확인

□ 영향도

- (통계계상오류) 총 수입금액은 변함이 없으며 무역통계 홈페이지의 특정메뉴(신성철별 국가별 수출입조회)에서 잘못된 통계가 조회됨
 - (국가부호오류) 총 수입금액은 변함이 없으며 무역통계 홈페이지의 국가별 통계 조회 시 오류국가부호로 등록된 통계는 미 조회
- ⇒ 조건 누락으로 일부메뉴에서 잘못된 통계가 조회되어 조치 중

참고 신고서 오류 국가부호

만료국가부호			현재국가부호	
국가부호	국가명	만료일자	국가부호	국가명
P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2010.4.30	PS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MI	미드웨이 군도	2003.6.30	-	-
NT	중립지대	2003.6.30	-	-
YM	마세도니아	2009.12.29	MK	마세도니아
BQ	영국령 안타르	2003.6.30	-	-
TP	티모르	2003.6.30	TL	티모르
PZ	파나마 운하지역	2003.6.30	-	-
CS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009.11.2	RS	세르비아
			ME	몬테네그로
YU	유고	2008.2.19	-	-
CT	칸톤 아일랜드	2003.6.30	-	-

※ 국가부호는 국제규격 ISO 3166-1 Alpha-2의 코드 명문 2자리 사용

6. 통계활용 실태

□ 무역통계 홈페이지 활용율(2017년도 기준)

- (분석결과) 접속일자를 분석한 결과, 매월 15일 동시접속자 수 530, 최대 화면 접속빈도 330만건에 이르며 가장 많이 보는 메뉴는 시도지역별 품목별 수출입 통계로 확인

조회기간 일 2017-01-01 ~ 2017-12-31 1주일 1개월 3개월 1년

초기화

조회

전체 58 건 페이지당 100 선택

메뉴명	중메뉴명	하위메뉴명	메뉴접속건수	엑셀다운건수
무역통계조회				
	수출입통계			
		수출입총괄	46740	2948
		품목별 수출입실적	403362	29795
		국가별 수출입실적	96679	6754
		성질별 수출입실적	32292	2502
		신성질별 수출입실적	15382	1182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543715	62004
		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28580	2173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17762	1540
		대륙별 수출입실적	11474	792
		경제권별 수출입실적	8832	1206
		세관별 수출입실적	14428	0
		종류별 수출입실적	17004	333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	11293	0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접근성 및 명료성

1-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 무역통계 소개, 조회, 수입가격공개, 언론보도자료 게시 등 무역통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tat/>),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통계교부대행기관(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에서 조회 가능

☐ 통계서비스 내용

- 품목별, 국가별, 성질별, 신성질별 등 무역통계, 수출입화물통계, 남북교역 등 공표
- 국민 관심품목(자동차, 라면, 김 등) 기획보도
- 농수축산물 가격공개, 월간 수출입동향 가격공개
- 월간 동향분석(양고기, 명절, 반도체 등)
-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통계청 공동발표),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 매월1일 잠정치, 11일, 21일 속보치 공표 자료
- 무역통계부호,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표 등 무역통계 관련 자료 공개

1-2 연락처 정보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
- 연락처 : 042-481-7846

1-3 ~ 1-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무역통계 작성 지침 등 설명자료 수록

- <https://www.customs.go.kr/stat/>

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음

- (사유) 사업자번호 등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 품목번호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특정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가 곤란

3. 비밀보호 및 보안

3-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비밀유지

-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3-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 특정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해외거래처, 상표 등은 비공개 원칙으로 엄격히 통제관리

3-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납세의무자, 관세의 부과 징수 등 통관을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누설할 수 없음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 접근권한의 제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시행 2015.6.17] [관세청훈령 제1743호, 2015.6.17, 일부개정]



관세청(정보개발팀) 042-481-7768

제7조(자료 접근권한의 통제) ① 내부자료 이용자에 대한 자료접근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부자료 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내부자료에 대한 자료접근권한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출입CS 자료: 통관기획과
2. 특송CS 자료: 특수통관과
3. 조사 자료, 화물CS 자료: 조사총괄과
4. 외환 자료: 외환조사과
5. 심사 자료: 법인심사과
6. 마약 자료: 국제조사팀
7. 여행자 자료: 특수통관과, 관세국경감시과
8. 감사 자료: 감사담당관실
9. 위험관리 자료: 정보기획과
10. FTA 자료: 원산지지원담당관실
11. 품목분류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12. 그 밖의 자료: 정보관리과

② 외부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 승인 즉시 이용자별 자료접근 권한 변동사항을 정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외교부의 여권 자료,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 선박정보 자료: 관세국경감시과
2. 국세청의 세적 자료: 법인심사과
3. 한국은행의 외환 자료, 여신금융협회의 해외카드정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신고 자료, 한국SW산업협회의 무채물 자료, 고용노동부의 보험가입정보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자료: 외환조사과
4. NICE신용평가정보의 업체 자료: 심사정책과

③ 내 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승인 여부 검토 시 제6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접근권한 협의 조정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관리과장은 내 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자료접근권한을 협의 통보받아 이용자별로 자료접근권한을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등

제3장 DB자료의 관리

제8조(DB자료의 변경 추가 요청) ① 이용부서는 통합정보시스템 DB자료의 추가구축, 보완 및 개선(이하 "보완"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보관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보완을 요청할 때 DB자료명, 항목, 코드내용, 연간 발생건수, 활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최소한 이용예정일 2개월 전에 정보관리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과장은 이용부서로부터 요청받은 보완을 검토할 때 해당 이용부서의 자료접근권한이 없거나 특별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부서와 내·외부자료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게 할 수 있다.

④ 이용부서가 요청하려는 DB구축 대상자료가 외부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자료전달매체 및 전달주기, 통신망 구축, 외부기관 간 시스템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자료구축 요청 전에 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DB자료의 변경 추가 결정) 정보관리과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H/W용량, DB 구축방안, 개발기간, DB자료 보존기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한 이용부서에 통합정보시스템 보완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 유지 및 실태 점검

제10조(이용권한 관리) ①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②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이 노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때 바로 그 사실을 정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안 유지) ① 이용자는 정보분석업무 수행 중 인지도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PC에 내려 받거나 용지에 출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회 범위는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내려 받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신 또는 발송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부서정보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사무관(1인), 주무관(3인, 기획, 분석, 제공 담당)
- 근속년수 : 기획(1년차), 분석(3년차), 제공(2년차)
-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작성기관을 위한 통계DB시스템 사용법 등 국가통계 담당자별 교육 수료

2. 자료처리 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무역통계 홈페이지 웹서버, WAS서버, DBMS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통계분석프로그램은(SAS 등) 활용하지 않음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무역통계 관리 프로세스 정립 추진

- 올해 무역통계 고도화 사업 BPR/ISP 추진 후 '19년도를 목표로 통계자료생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변경이력, 근거 등) 체계 마련 예정

< 통계제공 일정 및 자료목록- 비공개대상정보 >

'18년 무역통계제공 일정표												
					정기							
구분					매일	매주	매월1일	매월 20일	매월	매월말	분기	연간 확정지
기관	자료명	요청형식	형식	비고								
③ 청와대, 국무총리실	일일수출입동향	-	한글(E-mail)	수출입 2종	09:30분경		8:30분경					
② 기획재정부	일일수출입동향	-	한글(E-mail)	수출입 2종	09:30분경		8:30분경					
	주요품목별·국별 수출입동향	-	엑셀(E-mail)	국가별, 품목별 등 7종	09:30분경		8:30분경					
	실시간 SMS 통계	-	문자메세지	수출입 증감, 무역수지						18시, 22시 2회		
	월별 물동량	-	엑셀(E-mail)	수출입물동량 1종			8:30분경					
② 산업통상자원부	일일수출입동향	-	한글(E-mail)	수출입 2종	10시							
	주요품목별 수출입동향	-	엑셀(E-mail)	품목별(산업부지정) 수출입 3종	10시		8:30분경					
	주요국가별 수출입동향	-	엑셀(E-mail)	국가별 3종								
	실시간 SMS 통계	-	문자메세지	수출입 증감, 무역수지		(금)19시 경				18시, 22시 2회		
	당월 20일 잠정통계	공문	엑셀(공문)	품목별(산업부지정) 수출입 2종				매월21일				
	전월 잠정 통계	-	한글,엑셀	원유가스, 성질별 수출입 등 7종			8:30분경					
	수출입통관기초자료	공문	엑셀	산업피해조사 관련								
③ 한국은행	일일수출입동향	-	한글	수출입 2종	09:30분경							
	국가별,경제권별, 등 통계	공문	한글,엑셀	국가별, 성질별, 품목별 3종			8:30분경					
	수출입 통계(거래품명)	공문	CD	사업자별, 품목별 수출입실적					매월15일경			매년 2월
	수출입 통계(모형/규격별)	공문	CD	사업자별, 품목별 수출입실적					매월15일경			매년 2월
	재화수출입 통계	전화	전화답변	선박/항공기 국내수리 후 반출				매월20일경				
③ 통계청	설비투자자산수출입 통계	공문	텍스트	세번별 수출입실적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입 통계	공문	CD	품목별 수출입(목록통관포함) 3종					매월15일경			
	제조업공급자산수출입 통계	공문	공문	품목별 수입실적 1종								
	지역경제동향관련 시도별 통계	공문	공문	시도지역별 통계							매분기	
③ 국세청	수출입 통계(통관기초자료)	-	CD	수출입실적 2종					매월15일경			매년 2월
	환급실적 통계	-		사업자별 내국세 자료								매년 1월
③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 통계	공문	공문(온메일)	현재는 대기업 등 모두 포함					매월15일경			
	중소기업지원 수혜기업 통계	공문	공문(온메일)	요청 사업자별 수출실적								
③ 조달청	해외조달시장지원 업체 실적	공문	공문	실적 동의 업체 통계					매월15일경			
	비축물자 관련 수입 통계	공문	공문	품목별 수입통계								
③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 통계	공문	공문	수출입 실적 2종					매월15일경			매년 2월

<무역통계 관리프로세스 개편 계획-비공개대상정보>

2019년 정보화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무역통계 고도화		
신 청 부 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공무원	6급 김 성 창
요 구 예 산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 ○ 무역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나 기업이 무역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편 ○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통계정보의 생산·제공·소멸 등 생멸주기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 시급성 ○ 수요자 맞춤형 국가통계 서비스 제공 - 기업무역활동과 관련된 150여개 통계표를 엑셀파일로 단순 제공하는 것은 통계서비스의 품질저하 뿐만 아니라 우리 청 정보화 수준도 평가 절하 우려 ○ 통계수요 급증에 따른 무역통계 생멸주기 전산기록 필요성 증대 - 기재부, 산업부 등 국가기관의 통계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통계 변경이력 등을 수작업 기록·관리하는 상황		
사 업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 조회) 무역통계 홈페이지는 개편('16.4월)하였으나 이후 승인 된 국가통계*는 파일로 등록 되어있어 이용자가 조회·활용에 불편 -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기업무역활동통계 ○ (통계 관리) 국가기관이 요청한 통계정보의 법적근거·목적·항목·제공주기 등을 수작업 관리하여 기관별 통계제공 현황파악과 업무연속성 유지 곤란 ○ (업무 수행)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통계를 생산·검증하므로 전산직원 부재 시 일반직원 업무대행 곤란 □ 개선방안 ○ (통계조회 편의성) '16년 이후 승인 된 국가통계를 무역통계 홈페이지에서 여러조건을 선택하여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개편 ○ (통계제공 전산화) 국가기관이 요청한 통계정보의 법적근거·항목·제공주기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 (업무수행 효율성)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일/월별, 수시 통계의 추출·검증·전송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수행 - 청와대, 총리실, 기재부, 산업부, 한국은행		

5.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12년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

통계작성절차별	과제유형	개선과제요약	개선내용
통계작성기획	조사방법개선	○수출통계의 출항일 기준 작성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출무역통계를 UN권고안*을 적용 “출항일”로 전환 추진('14.3월) →관계기관의 반대로 무산 *UN 국제상품 무역통계 지침 제15절 (기록시점) 일반적 기준으로서 상품이 일국의 경제영역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통계에 계상하도록 권고
자료수집	지침서 작성·보안 및 교육	○관세사 교육 강화	미이행
자료입력 및 처리	조사(보고)현장 관리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사전검증 전산시스템 강화, 사후정제를 위한 데이터품질관리 조직운영 , 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지속 보완·운영으로 오류검증 안정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고시
	전산(보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관리시스템 개선	단계별 수출신고 오류검증시스템을 전면 전산화로 개편 운영('12.10월) →신고,심사,수리후 검증단계를 전면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문서화 및 자료제공	업무매뉴얼 작성	○정정현황 반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 품목별·국가별 수출/수입	위험관리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수행
	통계공표 자료 개선	○통계관련 용어 및 자료 제공 개선	“확정치”는 연확정시에만 사용하고 잠정치(1일), 속보치(11,21일), 월통계(15일) 용어로 개선
사후관리	인력·예산 통계 인프라 확보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식약처, 환경부, 검역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운영 중
기타	인력·예산 통계 인프라 확보 등	○관세청 통계작성 전담인력 확보	무역통계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확보 추진('17.4월) →인천공항 T2개장 관련인력 확보의 시급성으로 추진 지연

VIII.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 <https://unstats.un.org>
 - UN 통계위 국제상품무역통계(IMTS)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 <https://comtrade.un.org>
 - 각 국가별 무역통계 조회·활용

3. 기타 문헌

- ☐ <http://trass.or.kr> 무역통계 보고서 목록
 - 품목별, 산업별 동향분석, 현안이슈분석 동향분석 일정 계획 등 수록

<품목별 동향>

무역통계 분석
Trade Statistics System

② 동향분석

Home > 무역통계 분석 > 동향분석

② 동향분석

- 품목별 동향분석
- 산업별 동향분석
- 현안 이슈분석
- 동향분석 일정계획
- 통계분석 제안

I 품목별 동향분석

전효원 통계연구실 연구원들이 생산해 내는 무역통계관련 연구·분석 보고서입니다.

주요 가전제품 수출입 동향

2015-05-27 / 조회: 3576 / 담당연구원: 백지현

평가점 0점 / 5점 만점 (TRASS회원 0점이 평가한 점수입니다.)

요약

국 수출입 동향

- 수출: '14년 전년대비 2.2% 감소, '15년 3월누계 전년동기대비 12.8% 감소
- 수입: '14년 전년대비 29.3% 증가, '15년 3월누계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5,720	5,659	5,481	5,358	-2.2	1,111	-12.8
수 입	465	626	735	951	29.3	218	11.5
무역수지	5,255	5,032	4,746	4,408	흑자폭 축소	893	흑자폭 축소

국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전년대비 증감)

- 수출: TV·공기청정기·냉장고·전기오븐·믹서기 증가, 그 외 감소

		주요 생활가전						주요 주방가전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전기오븐	믹서기			냉장고	전기오븐	믹서기	전기밥솥
수출	금액	1,556	786	211	254	13	5	1,969	59	10	51	273	138
	비율	55.1	27.8	7.5	9.0	0.5	0.2	78.5	2.3	0.4	2.0	10.8	5.5
	전년대비	6.3	-20.0	-22.1	-14.2	-9.3	37.0	4.2	-5.0	42.7	-17.5	14.5	-12.3
	전년동기대비												
수입	금액	142	73	163	152	125	3	102	69	35	19	66	2
	비율	21.6	11.1	24.8	23.2	19.0	0.4	34.9	23.5	12.1	6.4	22.4	0.6
	전년대비	38.7	20.7	17.9	52.6	14.4	-25.8	36.5	20.5	41.0	0.5	49.2	71.0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동향>

무역통계 분석
Trade Statistics System

② 동향분석

Home > 무역통계 분석 > 동향분석

② 동향분석

- 품목별 동향분석
- 산업별 동향분석
- 현안 이슈분석
- 동향분석 일정계획
- 통계분석 제안

I 산업별 동향분석

전효원 통계연구실 연구원들이 생산해 내는 무역통계관련 연구·분석 보고서입니다.

주요 에너지 수출입 동향

2015-05-08 / 조회: 4804 / 담당연구원: 백지현

국 수출입 동향

- 수출: '14년 전년대비 7.5% 감소, '15년 3월누계 전년동기대비 42.1% 감소
- 수입: '14년 전년대비 2.5% 감소, '15년 3월누계 전년동기대비 42.1% 감소
- 무역수지: '14년, '15년 3월누계 모두 전년(동기)대비 적자폭 축소

(단위: 억원, 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월누계	'15년 3월누계	'15년 3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	350	383	355	329	-7.5	52	-42.1
수입	1,695	1,823	1,762	1,717	-2.5	279	-42.1
무역수지	-1,345	-1,440	-1,408	-1,388	적자폭 축소	-227	적자폭 축소

국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전년대비 증감 / 최상위국)

- 석탄: [수출] 감소 / 일본 [수입] 감소 / 호주
- 원유: [수출] 증가 / 베트남 [수입] 감소 / 사우디아라비아
- 석유가스: [수출] 증가 / 중국 [수입] 증가 / 카타르
- 석유조제품: [수출] 감소 / 싱가포르 [수입] 증가 / 러시아

(단위: 억원, 천)

		석탄	원유	석유가스	석유조제품
수출	금액	10	0.01	317	32,551
	비율	0.0	0.0	1.0	99.0
	전년대비	-34.1	52.9	4.5	-7.6
	전년동기대비				
수입	금액	12,114	94,907	36,564	23,093
	비율	7.1	55.3	21.3	16.4
	전년대비	-7.3	-4.5	0.7	2.4
	전년동기대비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21

주요 에너지 수출입 동향

2015-05-08

4804

○ <https://www.customs.go.kr/stat/> 보고서 목록

수출입통계 기획분석 자료[2017년기준]		
구 분		보 도 내 용
정 기	월 별	수출입현황[1일(잠정치), 11일, 15일(확정치), 21일]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
	분기별	승용차 수출입 현황(1월, 4월, 7월, 10월)
기 획	1월	(관심품목) 담배 수출입현황 (설맞이) 주요 차례상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사탕류 수입현황 (이슈품목) 바닷가재 수입현황
	3월	(유망소비재) 목욕용품 수출현황 (계절특수) 등산화 수입현황
	4월	(이슈품목) 전통장류 수출현황 (유망소비재) 화장품 수출현황
	5월	(가정의날) 꽃(花) 수출입현황 (이슈품목) 이차전지 수출현황
	6월	(계절특수) 여름 물놀이용품 수입현황 (관심품목) 커피 수입현황
	7월	(계절특수) 웰빙가전(에어콘, 공기정화기 등) 수출현황 (테마분석) 수출입 중소기업 분석
	8월	(계절특수) 빙과류 수입현황 (계절특수) 맥주 수출입현황
	9월	(테마분석) 지자체별 수출입현황 (추석맞이) 주요 차례상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0월	(테마분석) 전자상거래 수출현황 (이슈품목) 라면 수출현황
	11월	연간 수출액 5천 달러 돌파 (이슈품목) 김 수출현황
	12월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돌파 (테마분석) 산업별·규모별 등 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